

개정 전	개정 후
<p>함한다)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 에 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6조제10항을 준용한다.</p>

■ 법률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생략)

제2조(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① 제8조제3항,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58조제4항, 제63조제2항 · 제3항, 제75조의2제1항 · 제3항, 제75조의4제2항, 제78조의2 본문,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<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>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35조의3(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 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「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35조의3(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 역 내 창업기업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----- -----.</p>